□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 4건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	서울 시설공단	⊙처, ▣처	입찰공고문상 적정임금 지급의무 관련 사항 미기재	통보				
2	서울 시설공단	▣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통보				
3	서울 시설공단	⊙처, ◈처, ◎처, ▣처	전문공사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 미이행	통보				
4	서울 시설공단	⊙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현장관리 우수	통보 (모범)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입찰공고문상 적정임금 지급의무 관련 사항 미기재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처, ▣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처,▣처)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외 1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 계약체결 현황

발주부서	공사명	수급인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서울시설공단 (⊙처)	2019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redacted]	2019.01.17.~ 2019.12.27.	2,014
서울시설공단 (▣처)	2019년 자동차전용도로 ***** 정비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19.01.21.~ 2019.12.20.	1,477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시장 방침 제324호, 2016.10.23.)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제10항,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에 따르면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가 적정임금 지급 의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입찰공고에는 〔표 2〕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입찰공고문 (예시)

11. 본 공사는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틀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후 7일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그런데 이 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문에는 “적정임금 지급의무 대상”공사인 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업자들이 해당 공사가 적정임금 지급 의무대상인 점을 알기 어렵게 함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 건 건설공사들의 공사감독(관리)관은 입찰공고문상에 ‘적정임금 지급대상 의무’인 점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입찰공고문”에 “적정임금 지급 의무대상”인 점을 기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의 입찰공고문 검토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시고 관련 직원 등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처)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자동차전용도로 **** 정비공사(연간단가)” 외 1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 계약체결 현황

발주부서	공사명	수급인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서울시설공단 (▣처)	2019년 자동차전용도로 **** 정비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19.04.11.~ 2019.12.2.	3,963
서울시설공단 (▣처)	2019년 ******교 교면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19.07.05.~ 2021.01.04.	7,368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시장 방침 제324호, 2016.10.2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근로계약서가 혼용됨에 따라 적정임금 및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 건 건설공사들의 공사감독(관리)관은 일부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원·하도급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전문공사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 미이행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처,◈처,◎처,▣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 일상유지보수공사 등 8개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공사내역

발주	공사명	수급인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사 내용
서울시설공단(⊙처, ◈처, ◎처, ▣처)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20.01.20	2020.12.31	신축이음보수, 콘크리트보수공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20.01.23	2020.12.31	신축이음보수, 콘크리트보수공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20.01.31	2020.12.31	교면포장, 콘크리트보수공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20.01.23	2020.12.31	신축이음보수, 콘크리트보수공
	***** ***** 환경개선공사	[redacted]	2019.09.11	2020.10.31	노후바닥재·벽체 개선으로 이용시민 보행 편의증진 및 미관개선

	2019년 *****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19.03.15	2019.12.24	***** 균열보수, 방수공사 등
	****** 외 1개소 보수공사	[redacted]	2020.01.28	2020.11.28	표면처리 700㎡, 타일정비 630㎡, ****포장 26a 등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 정비공사(연간단가)	[redacted]	2020.02.10	2020.12.31	부속시설물 노후 및 파손 정비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대책」(시장 방침 제324호, 2016.10.23.),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 2019.2.1.)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하도급제한)등에 따르면,

하도급 불(不)공정 해소를 위하여 2억~100억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야하므로, 발주부서는 해당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1]'를 통해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검토해야하고, 종합공사[2]의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거쳐 공종분리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표 1〕의 공사들은 2~100억 미만의 공사였음에도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발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공감회의 결과,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공사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향후 공사 발주 전에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및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철저히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100억 미만 공사 중 계약심사 대상 사업
2)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종합공사 발주 가능 공사 포함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 및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위 원 회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현장관리 우수

관 계 기 관 ○○○○실(○○○○과), 서울시설공단(⊙처)

모범 대상자 ㈜◇◇◇◇◇〔공동수급인 ㈜◆◆◆◆◆〕

모 범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 교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 계약체결 현황

발주부서	공사명	수급인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서울시설공단 (⊙처)	2019년 *****교 내진보강공사	㈜◇◇◇◇◇ 〔공동수급인 ㈜◆◆◆◆◆〕	2019.07.05. ~2021.01.04.	7,368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시장방침 제324호, 2016.10.23.)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 5, 제1항~제5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위 건설공사의 수급인 ㈜◇◇◇◇◇〔공동수급인(주)◆◆◆◆◆〕은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 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건설근로자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였고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 2회(출근시, 퇴근시) 현장투입인력 관리를 통한 개별근로자 출결에 따른 임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근로자 출근현황, 근로자 출근내역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는 등 효율적인 현장 인력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건설공사 대부분의 현장이 건설근로자 근무실태를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산재·임금체불 등 피해발생시 보상이나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건설공사 수급인 ㈜◇◇◇◇◇〔공동수급인(주)◆◆◆◆◆〕은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이동식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건설근로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설근로자 전산관리를 통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하거나 현장 투입인원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사고예방 및 근로자 권리구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역과『대금e바로』와 연계를 통해 실제 근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고 설치대상 확대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전자인력관리시스템』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고 위 건설회사에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이고 모범사례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